

朝鮮生產性과 勞務關係

生産性과 賃金 및 物價



朝鮮日報論說委員 金成斗

企業規模의 量的擴大와 더불어 經營의 科學化 乃至 合理化問題가 提起된지 이미 오래다. 最近 이와같은 一連의 經營合理化의 一環으로 生産性賃金制度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이른바 事務係의 機械導入을 비롯한 能率化와 함께 새로운 先進外國의 科學的인 管理技法의 導入으로 原價를 切減하고 生産性向上을 期한다는 것은 企業의 對外競爭力 強化問題와 더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1. 生産性勞賃制是非

요즘 이른바 生産性勞賃制라하여 生産性이 늘어나는데 따라 勞賃을 조절해야 한다는 主張이 상당한 影響力을 가지고 高唱되고 있는데 原理的으로 따져 천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生産性이 늘어나고 따라서 收益性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勞賃은 묶어두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니까. 반대로 生産性은 전연 늘어나지 않고 따라서 收益性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勞賃만 늘여야 한다는 것도 無理한 이야기다. 從前부터 企業이 너무 過分하게 利益을 독차지해 왔다면 生産性이 늘지 않더라도 勞賃을 올려줄 餘地는 있다. 그러나 企業利潤에 餘地가 있는데도 勞賃을 올려주어야 한다면 결국 製品價格을 引上해서 하는 도리밖에는 없다. 만약 그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난다면 賃金이 올랐다고 勞動者가 좋아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것으로 지배할 수 있는 商品의 量은 增進과 다를 것이 없게 되고 말것이니까.

生産性勞賃制를 들고 나온 企業側의 主張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主張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의 高度成長을 지속해 온 결과로 有効需要가 늘고 雇傭이 增大되어감에 따라 賃金이 오르고 그에 따라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技能工을 중심으로한 勞動力 不足現象이 현저해 짐으로써 企業은 每年 20~30%씩의 賃金引上을 불가피로 했다고 主張한다.

이와같은 賃金引上은 곧 價格에 전가되어 「코

그러나 現在 論議되고 있는 生産性金制度는 그것이 이제까지의 無理論의 報酬體系를 보다 合理的인 基準위에 確立시켜 勞動者의 生活를 向上시키고 그같은 生活向上에서 結果할 勞動 生産性上昇으로 經濟發展의 速度를 提高하고 企業에게 돌아가는 分配分의 크기도 크게 하려는 近代의 感覺의 制度와는 어떠한 差異가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誘導되어야 할 것인가가 問題點이라 하겠다.

스트·인프레를 이르고 그것은 다시 物價引上 賃金引上이라는 순환작용은 이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企業의 擴大再生産을 위한 投資를 蠶食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實證하는 것으로 1965年以來의 勞賃指數의 變動率을 提示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1965年을 100으로 했을 때, 그 上昇率은 66年이 105.1, '67年이 116.2, 그리고 68年이 126로 되어 있다. 그위에 그동안 새로운 生産方法이나 新施設의 導入등으로 生産性이 상당한 정도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勞動生産性의 上昇도 그 限界性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賃金上昇을 억제하여 賃金의 上昇과 生産性의 上昇을 均衡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生産性賃金制를 들고 나온 企業側의 立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年初에 정부가 발표한 生産性賃金制는 年間消費者 物價를 10%로 잡고 그것에 勞動生産性 上昇率 5%를 加算한 15% 以內로 賃金引上을 抑制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分配政策의 正常化나 適正化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勞賃上昇으로 인한 「코스트·푸쉬」와 資本蓄積이 沮害될 것을 두려워 한데서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見地에서 企業側의 환영을 받았던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와같은 勞賃引上의 上限線設定에 근로자側이 만족할 理는 없다. 勞總聯은 그 철회를 위해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聲明하고 나섰다. 勞總側의 主張은 우리나라 賃金水準은 政府가 介入하여 강력한 規制策을 쓸 정도와는 아득한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먼저 勤勞者의 現實的인 所得水準과 家計費를 들고 나온다.

經濟企劃院이 조사 발표한 작년 2.4分期 全國 勤勞者 家口의 月平均 家計支出은 22,880원이고 4.4分期의 그것은 18,870원인데 대해 韓銀調査에 나타난 68年度 6月の 製造業勞務者의 月當 平均給與額은 8,360원으로 生計費의 절반에도 未達하고 그것으로서는 한 家口의 쌀값(9,000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低賃金으로부터 税金, 國民貯蓄, 保險料, 共除會費 防衛誠金 기타 작가지 이름아래 수입의 10% 내지 20%까지를 소득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生産性勞賃制란 名目으로 賃金引上의 길을 봉쇄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勞動生産性은 年間 10% 가까이나 올랐고 經濟成長率역시 10%식이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勞賃水準은 實質的으로 1960年水準에서 제자리거름만 하고 있다는 것은 經濟開發의 目的과도 違背될뿐 아니라 國民經濟의 均衡을 파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까지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反駁하고도 있다. 또 勤勞者들의 生活水準을 지금과 같은 低水準에 억눌러둔다면 그것은 곧 勤勞者들로 하여금 經濟發展의 意義에 대한 懷疑를 품게 할 것이며 꿈과 希望을 상실케 하여 勞動意慾과 技術向上을 無望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참다운 生産性向上을 위해 所得分配制度의 革新을 要求하고 있다.

2. 生産성과 賃金

이상 대체로 企業側과 勤勞者側의 엇갈린 主張을 훑어 보았거니와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雙方이 다 그 나름으로의 根據를 갖고 있다. 또 雙方이 다 함께 我田引水的인 根據를 찾아 主張을 正當化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企業側이 賃金上昇이 급격하다는 것을 反證하기 위해 實質 勞賃水準이 최근 10年동안 最下로 떨어졌던 1965年을 基準으로 잡고 있는데 대해 勞組側은 1960年度를 基準으로 잡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다. 65年을 基準으로 했을 때의 實質勞賃水準의 上昇率은 이미 言及한 바 있거니와 勞組側이 내세우는 1960年을 100으로 하

여 物價上昇을 감안한 實質勞賃의 上昇率은 62년이 99.8, 63년에는 91.6, 그리고 64년에는 85.9로 最低로 내려갔다가 65년에는 88.5로 조금 회복기미를 보이고 66년에는 91.8로, 그리고 6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60年水準을 넘어선 104.0를 기록했다.

그동안(1960~1967) 勞動生産性은 87.3%가 올랐다. 全産業으로서는 年平均 9.3%가 늘어났고 그중 製造業은 9.5%, 鑛業은 6.0% 그리고 電氣業은 16.2%나 늘어났다. 이와같은 급격한 伸張率이 가능했던 것은 生産性이 전연 보잘것 없던 상태에서 출발하여 公업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신규시설투자와 기술도입을 추진시키는 한편으로 노동력의 질적향상이 괄목할 정도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勞動生産性이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勞賃水準이 전연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生産性上昇의 果實은 그 모두가 企業으로 귀속된 것이고 일단 볼 수 있다. 勞動生産性의 上昇은 物價를 떨어뜨려 소비자를 利롭게 하던지 노임上昇으로 낙착되던지 또는 利潤을 올리던지 하는 세가지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두개 아니면 그 모두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다 알다싶이 物價는 급격한 상승을 거듭해 왔고 그에 따라 勞賃은 名目的으로는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物價上昇을 감안한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뒷거름질이 아니면 제자리거름만 하고 있었으니까.

表에서 보다싶이 다른 나라에서는 勞動生産性의 上昇은 利潤率을 끌어올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賃金, 특히 실질임금의 上昇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가령 일본의 경우를 보면 勞動生産性指數가 60年을 100으로 하여 66년이 166.9로 되어 있는데 따라 實質賃金指數도 127.2로 늘어나고 있다. 西獨의 경우는 65년까지 生産性이 24.6%가 늘어난데 대해 실질임금지수는 그보다 훨씬 앞지른 36.1%로 되어 있고 영국역시 生産性이 13%(65年)늘어난데 대해 실질임금은 14%가 오르고 있으며 美國은 生産性이 25% 늘어난데 대해 실질임금은 8.7%가 오른것으로 되어 있다.

英國이나 西獨이 生産性向上의 이익의 대부분을 勞動者에게로 配分하고 있는 것은 國家的으

로 社會福祉에 力點을 두고 있는데다가 이미 蓄積된 資本이 巨大하고, 반대로 勞賃水準이 그동안 상당히 억제되어 왔다는데 대한 反動일 수도 있고 또 美國水準에 뒤따르려는 발돋움일 수도 있다. UN통계에 의하면 67年의 公업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이 2.83美弗인데 대해 서독은 1.15美弗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같은 해의 日本의 시간당 賃金은 0.63弗, 자유중국은 0.16弗, 그리고 한국은 0.123弗로 되어 있다. 같은 통계에 의하면 62년에 대한 67年의 比率上의 增加率은 美國이 22%, 서독이 57.5%, 일본이 85.3% 그리고 자유중국이 33.3%가 늘어난데 대해 우리나라는 이 6年동안에 불과 7%가 늘어났을 뿐이다.

1966年의 우리나라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때 미국은 2,300 즉 23倍고 서독은 935로 아홉배, 日本은 5.12로 5倍 그리고 자유중국은 130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賃金水準은 매우 낮다. 그것이 그렇게 낮게 억제되어 온 것은 뭐니 뭐니 해도 完全失業, 不完全就業者의 數가 원체 너무 많기 때문이다. 完全失業은 約 60萬인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의 정확성을 가진 것인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조사기간중에 일할 意思와 能力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시간도 일에 종사하지 않았던」 者가 즉 完全실업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失業保險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 失業保險을 타먹으며 확실한 일자리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 팔자좋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기 위해 무슨 일이나 종사해야만 한다. 다만 몇시간이라도 일해야한다. 그러기 때문에 意思와 能力이 있으면서 「단 한시간도 일을 하지 않고」 배겨낼 수가 없다. 「단 한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者는 完全失業者가 아니다. 完全失業者도 아니고 完全就業者도 아닌 즉 不完全就業者가 대단히 많다. 정부통계로는 適當 30時間 未滿을 不完全就業者로 잡아 그 數字가 158만(67年)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나 40시간~50시간을 일을 해도 제대로 生活費를 벌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完全就業者」도 完全就業이랄 수는 없다 그와같은 完全失業不完全就業者의 沙汰가 賃金水準을 끌어내리는 作用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勞使關係의 前近代性은 그 作用을 制動 못하고 있다. 그리고 低水準의 勞賃은 그것으로 한 家族의 最低限의 生活費도 지탱하지 못하고 있

다는데서 年老者 兒女子까지 勞動力市場으로 進出하게 하여 다시 勞動力供給過程을 加重시켜 그 값인 勞賃水準을 끌어내리는 惡循環을 되풀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속에서 勞動生産性의 向上이 勞賃水準의 向上으로 나타날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노동 생산성과 임금과 물가(제조업)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한 국	노동 생산성 지수	100.0	112.2	114.8	122.4	133.2	156.5	162.4	187.3
	명목 임금 지수	100.0	109.2	115.0	127.3	154.6	180.8	210.8	259.0
	물 가 지 수	100.0	108.1	115.2	139.0	180.0	204.4	229.7	249.2
	실질 임금 지수	100.0	101.0	99.8	91.6	85.9	88.5	91.8	104.0
일 본	노동 생산성 지수	100.0	110.2	113.4	124.4	141.7	148.8	166.9	190.0
	명목 임금 지수	100.0	111.2	102.4	134.5	149.1	162.9	180.8	—
	물 가 지 수	100.0	105.3	112.5	121.0	125.6	135.2	142.5	—
	실질 임금 지수	100.0	105.9	108.5	111.4	118.6	119.8	127.2	138.8
서 독	노동 생산성 지수	100.0	103.5	107.0	110.5	119.3	124.6	127.2	—
	명목 임금 지수	100.0	111.1	123.9	132.5	142.7	156.4	—	—
	물 가 지 수	100.0	102.3	105.4	108.5	111.1	114.9	118.9	—
	실질 임금 지수	100.0	108.6	117.6	122.1	128.4	136.1	—	—
영 국	노동 생산성 지수	100.0	98.2	100.0	105.4	111.7	113.5	115.3	—
	명목 임금 지수	100.0	106.1	110.5	115.8	124.6	136.8	—	—
	물 가 지 수	100.0	103.4	107.8	109.9	113.5	119.1	123.7	—
	실질 임금 지수	100.0	102.6	102.5	105.4	109.8	114.9	—	—
미 국	노동 생산성 지수	100.0	102.8	110.2	113.9	120.4	125.0	127.8	—
	명목 임금 지수	100.0	102.8	105.6	109.3	112.1	115.9	—	—
	물 가 지 수	100.0	101.1	102.2	103.5	104.8	106.6	109.7	—
	실질 임금 지수	100.0	101.7	103.3	105.6	107.0	108.7	—	—

자료: 한은 「조사월보」 1968. 7

3. 勞使關係와 所得政策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勞動生産性의 向上을 내세워 勞賃水準의 引上을 요구할 만큼의 입장에 있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 반해 다른나라에 있어서의 오랜동안의

勞使關係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勞動生産性을 前提로 하고 基準으로 하는 方向으로 進展되어 왔다. 勞動生産性이 오르는데 따라 그것과 同率로 實質賃金이 오르고 또는 勞動時間이 短縮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기는 1925年 美國勞動總聯의 總會에서 채택된 宣言이 그 호시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거기에서는 勤勞者의

입장에서 賃金引上을 비롯한 勞動條件의 改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經營者側에 좌담한 인상이 짙은 先進國의 이른바 所得政策 (incomes policy)이라는 것도 原理的으로 生産性의 向背를 그 基準으로 잡고 있다.

先進國에서 貨弊所得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占하는 것은 賃金·俸給인 것이고 또 製造코스트중에서 문제로 되는 것도 賃金·俸給인만큼 이름은 incomes policy 라고 復數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賃金問題를 中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가이드·포스트」에 따른 賃金引上方式. 英國保守黨政權下에서의 政府, 勞組, 企業의 三者代表로서 構成되는 國民經濟開發審議會 (NEDC)와 國民所得委員會(NIC)의 設置, 프랑스에 있어서 역시 政府, 勞組, 企業의 三者로 構成된 國民所得會議의 設置, 그리고 西獨의 「가이드·라인」方式의 採用등은 그 形式은 다를망정 그 具體的適用은 賃金引上和 生産性을 같이 묶자는데 있다. 최근에는 日本에서도 이와같은 所得政策을 前面으로 내세우고 있다.

「勞動階級の 購買力이라 할 實質賃金은 勞動 生産性增加에 符合하여 增加하지 않는限 社會의 不平等, 産業의 不安定, 不正義가 擴大되어 갈 것이라고 宣言(1925年 AFA總會)하여 賃金引上 鬭爭의 스톱간으로 삼아왔던 生産性이 오늘날에는 『最近의 物價上昇의 原因이 賃金의 上昇이 生産性을 上回하는 「코스트·인프레」的 傾向에 있다』고 내세워 『物價對策으로서 勞使間協定에 의한 賃金의 長期安定化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企業側의 賃金抑制의 口實로 뒤바껴 있다는 것은 그만큼 勞組側의 賃金鬭爭이 효과적으로 展開되어 왔다는 先進國의(적어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눈으로는) 부러운 現象이라 할만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떠한 경위로 生産性이 그와같이 뒤바뀐 側으로 좌담하기까지 된것인가를 따지지 않기로 하고 단지 生産性向上과 그 成果의 配分문제에 갖는 意義만을 적어두기로 한다.

生産性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生産에 필요한 投入量을 줄이고 더 많은 產出量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投入量이 줄어드니까 「코스트」가 적게 먹히고 生産量이 늘어나니까 收益이 늘어날 것은 정한 이치다. ILO의 生産性專門家會議

는 生産性上昇의 效果를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結論짓고 있다. 즉 生産性上昇은 전반적인 생활 수준향상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1) 가장 싼 「코스트」와 값의 소비재와 생산재의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2) 實質所得을 높이며

(3) 勞動時間의 短縮과 作業條件 및 生産條件의 改善을 가져오며

(4) 一般的으로 人類福祉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는 기회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生産性이 오른만큼 그것에 따른 이익이 첫째로는 資本家, 勞動者 및 消費者에게 均등하게 配分되어야 하고 둘째로 財貨 및 用役에 대한 需要가 高水準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生産性向上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失業을 방지할 수 있다. 資本不足때문에 雇傭機會가 制限되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資本形成率을 적절히 確保하는 문제에 특별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生産性이 올라 利益이 크게 늘어났더라도 그것이 適切하게 配分되지 않는다면 需要와 雇傭이 줄어들어 모처럼 向上시킨 生産性이 다시 停滯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4. 賃金과 物價

다시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되돌아와서 生産性과 勞賃과 物價의 相關關係를 종합적으로 다뤄 보자.

政府가 生産性勞賃制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은 『최근 수년간의 賃金趨勢가 生産性增加率을 육박하여 原價上昇(cost push) 작용을 하는 경향을 나타낼뿐 아니라, 低賃金을 前提로 國內에 投資했던 外國業者가 다시 海外로 옮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美國水準의 23分の1, 日本勞賃의 5分の1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勞賃이 비싸다고 판테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값을 싸게 보고 있기로서니, 비록 최근

와서 우리나라 노임수준이 겨우 몇 %가량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붓짐을 싸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나라 勞賃은 언제까지나 그들나라 勞賃의 몇분의 1, 몇십분의 일로 固定되어 있어야 한다고 前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지로 韓國에 오기로 한 어느 外國企業이 香港으로 投資地를 바꾼 것은 勞賃때문이 아니라 立地條件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다음 賃金趨勢가 生産力增加率에 육박해 가고 있다는 것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接近하기 위한 共和黨政策委의 分析에 의하면 66~68年 3年間의 生産性增加率は 9.8%인데 대해 賃金水準의 增加率は 9.3%로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분석에 있어서도 61~67年間의 同部門 生産性增加率이 9.5%인데 대해 實質賃金 增加率は 2.2%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公式統計로는 前項에서 본 바와 같이 60~67年의 8年間을 통해 4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年間 2.2%식이나 增加해 온 것으로 계산이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어느것으로 치나 生産性向上과 賃金水準의 向上은 長期間을 두고 逆行해 왔거나 큰 격차를 두어 왔던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進展되어 온것은 즉 勞賃水準의 實質的인 上昇을 억누른 것은 長期間을 통한 급격한 「인프레」의 作用이 컸다. 앞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名目的으로는 賃金水準도 상당히 올랐다. 그러나 같은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勞賃上昇은 언제나 物價上昇에 뒤달았고 그것도 곧 다음의 物價上昇에 의해 相殺되고 말았다. 그와같은 인프레의 昂進過程은 生産性向上의 果實이 消費者에게도 分配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意味하며 直接的인 生産過程에서가 아니라도 追後 再評價를 통해 그 所得은 尙尙實物資產의 所有者인 資本家에게로 移轉되어 갔다. 말하자면 이때까지 「크리핑·인프레」를 利用해서 또는 그 德分으로 生産性向上에 따른 所得增加分の 勞動 및 消費者에 대한 分配率을 實質的으로 抑制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도 基本的으로는 그와같은 趨勢가 그대로 持續되고 있다. 開發 「인프레」 外資導入

輸出增大등에 따른 海外部門으로부터의 通貨量 膨脹등으로 「인프레」는 여전히 昂進하고 있다.

단지 그 정도가 문제로 되고 있을 뿐이다. 「크리핑·인프레」가 고개를 숙이게 됨에 따라 전달과 같이 分配率을 抑制할 수 없게 되었고 分配率을 抑制하자면 價格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다시 「인프레」의 惡性化를 結果할 수 밖에 없는만큼 그것을 回避하는 길은 利潤率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物가를 너무 끌어올리지 않고 利潤率을 전달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은 勞動에 대한 分配率을 抑制해서 밖에 도리가 없다. 企業이 賃金抑制를 要求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이와 같은 理由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企業의 立場이 그렇다고 政府가 先進國의 所得政策의 軌에 서서 그 調節에 나서지는 것이 옳을 것인가. 先進國의 所得政策은 物價昂騰이 賃金引上에 의한 cost push 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프레」에 對處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賃金上昇에 따른 「인프레」가 아니라 開發 「인프레」超過需要에 따른 「인프레」인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勞賃抑制로 對處한다는 것은 勤勞者로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렇더라도 生産性向上을 넘어서 賃金引上은 不當하지 않겠는가 할런지 모르지만 生産性上昇과 勞賃上昇測定에 대한 基準期間과 時日이 문제고 더우기 그 基準日字의 賃金水準이 生産性에 대해 適正했던가의 如否는 더욱 큰 문제다, 企業이 賃金水準이 최근 10年間 둘째번으로 最低에 달했던 65年을 基準으로 한것은 故意가 切半이다. 그때 生産性에 相應한 賃금이 支拂되고 있었다고 내세울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를 出發點으로 잡아 基準을 삼는다는 것부터가 不當하다는 結論밖에 될 것이 없다. 물론 勞組側이 내세우는 60年의 勞賃水準이 適正했던가의 如否도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明白한 것은 1960年을 基準으로 그 前 그 後를 통해 그리고 지금 이 時點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勞賃水準은 근로자의 가계지출과 겨우워 너무나도 低水準에 있다는 點이다. 勞賃水準의 基準은 적어도 그 最低生活을 保障하는 線에서부터 出發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일 것이다.